

행 정 자 치 부

훈 계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제외자가 아님에도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구리시

관련대상자 구리시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06. 6. 30.부터 2016. 2. 14.까지 근무성적평정 업무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고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
-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 가(32점 미만) 10%

또한, 제31조의3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 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리시에서는 2015년 상·하반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평정대상을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명시하여 쏠 부서에 통보하였다(○○○-○○○○○○/○○○-○○○○○○)

모든 부서에서는 동 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 서명을 받아 근무성적평정 관련 주무부서인 ○○○로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자가 아님에도 당해년도 7월중(2015. 6. 24. 승진의결) 또는 다음연도 1월중(2015. 12. 21. 승진의결) 승진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 등 20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과정을 거쳐 평정점과 평정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의 변경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지방○○○○
○○○○ 등 55명의 평정등급, 평정점이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법령에 맞게 등급별 인원배분을
재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
한 결과 후순위자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들의 순위가 일부 변경된 결과가 초래되
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 따르면 근무평정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
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리시에서는 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5. 7. 27.자로 심의방법을 실무담당자인 지방○○○○ ○○○이 서면심의 개
최를 직접 제안하여 결재를 득한 후(접수-○○○-○○○○○○/ 주무관 ○○○,
간사 ○○○, 부위원장 ○○○, 위원장 ○○○) 안건을 서면심의함에 따라 회의
록이 미작성되었다.

조치할 사항 구리시장은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시 관련 법령을 준수
하시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